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만균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37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월 31일

발 의 자 : 임만균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신정호, 박상구, 김재형, 정재웅,
최정순, 김춘례, 김정환, 이영실,
김경영, 양민규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(제6946호, 2018. 12. 31. 제정·시행)에서 법 제27조에 따라 시장이 하는 통합심의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으로 추가하여 관련 법규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에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통합심의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6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,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
 2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 3.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도시재생위원회 구성·운영)</p> <p>① 시장은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6조(도시재생위원회 구성·운영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p> <p>1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</p> <p>2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항</p> <p>3. 다른 조례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 1항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통합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
- 이는 서울시의 타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가 제 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심의를 도시재생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남승우
사업평가팀장	여차민
예산분석관	한기백

☎ 02-2180-7952
e-mail : hophan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지 않는 자료입니다.
